

해외 기업과의 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필요성 검토



작성자: [Hwan Kim](#) 및 [Neil Popovic](#)
(2018년 6월 13일 게시)

최근 캘리포니아 사건으로 인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들은 해당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재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ockefeller Technology Investments (Asia) VII v. Changzhou SinoType Technology Co., Ltd.*,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Hague Service Convention 으로 불리는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정의 공식 요건을 계약서를 통해 우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국제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해외 기업과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은 미국 법원 또는 일부 중재 포럼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Rockefeller* 판결에 인하여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한국, 러시아 및 멕시코를 포함한 일부 경제 대국의 해외 기업들이 계약서상 우편, 택배(FedEx), 또는 이메일 송달에 동의했다 하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나 GM 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회사들, 해외 투자자들을 수반하는 투자 자금, AECOM 과 같이 재료를 조달하고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다루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 회사,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ockefeller 법원은 Hague Service Convention 에 명시된 공식 송달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인 합의를 맺을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해외에서의 소장 송달을 허용하고 규제하며, 송달이 협정을 준수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창안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른 송달은 요청국 및 수령국의 "중앙 당국"을 통한 법원 문서의 송달을 요구하며, 수령국은 해외 당사자에게 실제로 송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Hague Service Convention 에 의한 송달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완료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협정 제 10 조는 계약 국가들로 하여금 우편을 통해 송달 및 송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8 개 주요국을 포함한 상업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은, 협정에 가입 할 때 제 10 조에 대한 이익을 제기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대체로 우편을 통한 송달이 수행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상 통지 조항에 따라 통지하는 것에 종종

동의합니다. *Rockefeller* 이후,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계약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Rockefeller Technology Investments (Asia) VII (미국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4억 1,400만 달러의 중재 결정을 집행하기 바랬습니다. *SinoType* (중국 회사)은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중재 재판이나 소송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재판 법원은 중재 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15개월 후, *SinoType*은 부적절한 송달을 근거로 동 판결을 무효화하려 하였습니다. 재판 법원은 송달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동 신청을 기각했으며, 당사자들이 우편을 통해 송달하기로 한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 법원은 *Hague Service Convention* 제 10조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에서는 우편을 통한 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며, *SinoType*이 소장을 수령한 중국은 제 10조의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판결을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 송달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Rockefeller*의 주장을 기각하고 협정의 문구가 개인이 아닌 각 국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민간 당사자는 조약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SinoType*이 소송 절차에 대해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고 적시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이 유효하다는 *Rockefeller*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판결은 "근본적인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으며", 무효한 판결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재의 근거가 되는 송달의 타당성이나 중재 결정 집행 관련 논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기존 계약의 경우, *Rockefeller* 판결로 인해 당사자들은 *Hague Service* 요건을 우회하는 조항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협정 제 10조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에서 해외 계약 당사자에게 송달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합니다.

본 판결은 기업들에게 *Hague Service Convention*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선사합니다. 최소한, 미국 당사자는 해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출두하지 않을 경우, 해외 당사자가 송달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협정은 해외 당사자가 소송에 자발적으로 출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Rockefeller* 판결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제 조약은 (*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의 판결은 연방 법원이나 다른 주 법원에 결속력이 없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Rockefeller* 판결에 의하여, 현재로서는 해외 당사자들에게 우편, 택배, 이메일을 통해 송달하여 미국 법원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